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및 운영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8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관리·감독기관 변경 필요	9
나. 정관(안 제4조)	10
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안 제5조)	12
라. 감염병감시정보원 임원 구성(안 제6조)	15
마. 운영 재원(안 제15조) 등	17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4.

(3) 회 부 일 : 2025. 10. 15.

2.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1.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함(안 제6조).

다.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라.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부칙 제2조).

Ⅱ.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총 33개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안 제4조제2항 등),

둘째,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일상감시 통합관리지원,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검사·분석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안 제5조),

셋째,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안 제6조),

넷째,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 재원으로 국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하는 것(안 제15조) 등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정관 변경(안 제4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사업(안 제5조제1항)	-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등
임원(안 제6조 및 제8조)	- 임원: 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 상임: 원장 1명과 3명의 이사 - 임명: 원장 및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임기: 원장 3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이사 및 감사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부속기관의 설치(안 제12조)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 설치 가능
운영 재원(안 제15조)	-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기부금품,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2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22조)	-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운영평가(안 제24조)	- 정보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운영평가 실시
출입·검사 등(안 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원에 출입·검사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29조)	- 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민법」의 준용(안 제30조)	- 이 법 규정의 정보원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감염병 유행 현황을 보면, 사스(2003. 3.~5월) · 신종플루(2009. 5.~2010. 4.) · 메르스(2015. 5.~12월) · 코로나19(2020. 1.~2023. 8.)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유행기간이 3년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사망자만도 35,605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였음.

< 국내 감염병 피해 발생 규모 >

감염병	국내 유행기간	발생규모 (명)	
		국내	
		확진자	사망자
사스	3개월 (2003.3~5월)	3	0
신종플루	12개월 (2009.5~2010.4월)	15,160	260
메르스	8개월 (2015.5~12월)	186	38
코로나19	3년 7개월 (2020.1월~2023.8월*)	34,572,554	35,605

* 코로나19 제4급감염병 전환(23.8.31.)

** 자료: 질병관리청

□ 이러한 일련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경직된 기존의 공적 조직의 감시 및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감염병 발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제정안과 같이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국외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국외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역학조사관 파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성격의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다층적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을 통해 효과적인 선제 대응으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신규 감염병 감시조직을 설립할 것인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감염병 감시조직을 설립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로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감시정보원’을 설립하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음.
- 그 외에 현행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에서 감염병에 대한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울특별시 소재)를 중심으로 이를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울특별시), 충청권질병대응센터(대전광역시), 호남권질병대응센터(광주광역시), 경북권질병대응센터(대구광역시), 경남권질병대응센터(부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및 별표 1).

- 제정안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관리·감독기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수용 입장입장이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와 국내외 감염병 대응업무는 질병관리청의 본래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신규 기관

설립보다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공공기관의 체계적 연계·관리 및 국가 감염병 대응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정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기관 사무 및 역할 분담 현황>

- ① (질병관리청)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조직) 종합상황실,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감시전략담당관,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관리국, 진단분석국 등
 - (소속기관) 국립보건연구원(국립감염병연구소 포함), 질병대응센터(수도권 등 5개 권역별 센터), 국립검역소 등 * ①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②감염병연구센터, ③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3개 센터
- ② (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관련 진료 및 예방·관리,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
 -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 연구,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가 및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소통역량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교육, 검역전문가 양성 등, 감염병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
- ③ (지자체) 전국 17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관리·감독기관 변경 필요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따른 인가(안 제4조제2항), 원장 및 상임이사 임명(안 제6조제4항), 자금 차입(안 제17조제2항),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안 제21조), 결산서 제출(안 제22조), 운영평가(안 제24조제1항), 출입·검사(안 제25조)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관리·감독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조직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관장은 질병관리청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임.

< 「정부조직법」상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관장 업무 >

부처	관장 업무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호은 제외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
질병관리청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나. 정관(안 제4조)

- 제정안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 13가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정관 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4조(정관)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포함 사항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의 기관 설립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정관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앞서 검토한 대로 정관 변경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0조(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생략)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8. (생략)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안 제5조)

- 제정안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으로 감염병 전과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감염병의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지원,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등 13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 >

1. 감염병 전과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 교류 및 협력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검사·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들 업무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18개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특히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일상감시 통합관리지원,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운영 등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질병관리청의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감염병예방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아울러 제정안의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 중 제5조제1항제13호인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라. 감염병감시정보원 임원 구성(안 제6조)

- 제정안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함(안 제6조).

제6조(임원)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임원 및 상임이사의 규모는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사업 내용, 규모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상기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사업의 수정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경우 임원은 원장 포함 15명 이내 이사로 하되,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명 이내의 이사로 하되,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23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마. 운영 재원(안 제15조) 등

- 먼저, 제정안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재원으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

제15조(운영 재원)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19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입금)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조(수익사업 등)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 신생기관으로서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으나,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하게 될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 차입금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상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한국보건산업

진흥원법」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사업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음,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기관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제정안 제28조 및 제31조의 조제목의 경우 ‘비밀엄수의 의무’ 및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있으나 법률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를 위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조제목을 수정¹⁾할 필요가 있고, 안 제28조 및 제32조의 내용 중 ‘도용’을 ‘도용(盜用)’으로 수정²⁾하는 것이 적정하겠음.

제정안	수정 의견
제28조(<u>비밀엄수의 의무</u>)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직원, 제27조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u>도용</u>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u>비밀 유지의 의무</u>) ---- ----- ----- ----- <u>도용(盜用)</u> -----.
제31조(<u>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u>)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직원(제27조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u>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u>)----- ----- ----- ----- ----- -----.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u>도용</u>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 ----- ----- <u>도용(盜用)</u> ----- ----- -----.
---	---

문 의 처
02)6788-5501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1008.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열번째판(증보판)』, 2023. 12. / 부록 정비 권고 용어 p.20